

제7조(도시비우기협의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
2.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
3. 도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·조정 사항
4.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

제8조(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각 국장과 해당기관 업무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도시비우기협의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, 협의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) ① 구청장은 도시비우기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

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.

1. 도시시설물의 신규 설치를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 · 조정
 2. 설치된 도시시설물의 통합 · 정비에 위한 검토 및 협의 · 조정
 3.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
-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은 도시비우기사업 관련 담당팀장 및 해당기관 업무담당자이며,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.
- 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- ⑤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 등)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, 전문가,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·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